2019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상남도지사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경상남도

채용	채용			선발 인 원				
방법	계급	채용분야	계	남	여	남·여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495	427	50	18		
공개 경쟁 채용		일반소방	312	287	25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10:00~11:40 (100분)
		구 조	10	10	-	-	-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50	40	10	-		
		소방관련학괴	25	20	5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지방	응급구조학괴	50	40	10	-		
경력	소방사	의무소방전역	30	30	-	-		
경쟁		전 기	3	-	-	3		10:00~11:00 (60분)
채용		화 학	4	-	-	4	-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2
		정보통신	3	-	-	3	- 글ㅜ(ン) · 녹어, 정별정의, 또정역계존 	
		건 축	5	-	-	5		
		안전교육	2	-	-	2		
		언론공보	1	-	-	1		

○ 창원시

채용 채용		## O H o I	선발예정 인 원(명)					
방법	계급	채용분야	계	남	ਲ	남·여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95	76	9	10		
공개 경쟁 채용		일반소방	12	10	2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10:00~11:40 (100분)
		구 조	21	21	-	-	-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	12	10	2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지방 소방사	응급구조학과	30	25	5	-		
경력 경쟁	201	의무소방전역	10	10	-	-		10:00~11:00
채용		정보통신	1	-	-	1	-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60분)
		건 축	3	-	-	3		
		선박 항해사	3	-	-	3		
		선박 기관사	3	-	-	3		

2 시험방법

(제1차)	\Rightarrow	(제2차)		(제3차)	\Rightarrow	(제4차)
필기시험	합 격	체력시험	합 격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포함)	합 격	면접시험

※ 응시자는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 단계 시험의 합격결정 전에 다음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함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1)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1선택형, 100점 만점
-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10:00 ~ 11:40 (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10:00 ~ 11:00 (60분)
- 3)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 다음의 배수를 곱한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해당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1.5배수	2배수	3배수
일반소방	구조, 구급,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전역	전기, 화학, 정보통신, 건축, 안전교육, 언론공보, 선박항해사, 선박기관사

-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소방 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 7]에 따라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별첨 1),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5)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생활영어의 출제범위

영 역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공채·경채 공통)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1]과 같음(별첨2)
소방 관계 법규	공개경쟁 채용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관련 학과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 화학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생	활영어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6) 필기시험문제 공개

가) 공개일시 : 2019. 4. 6.(토) 시험종료 후

나) 공개장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다) 공개내용 : 필기시험 문제지, 가답안

7) 필기시험 출제문제 문의기간 운영

가) 운영기간 : 2019. 4. 6.(토) 11:40 ~ 4. 7.(일) 24:00

나) 신청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 작성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등록 (별첨 3)

다)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가답안 이의제기

※ 전화문의 및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각 종목별 10점 만점, 총점 60점

- 2)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3)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별표 7]에 의함 (별첨 4)
- 4)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별표4]에 의함(별첨5)

- 5) 도핑테스트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혁신처고시 제2019-1호(2019. 1. 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고시」에 따라 실시(별첨 6-1 ~ 6-4)
 - 가) 대상선정 : 체력시험 응시자 중 5~10% 범위에서 무작위 추첨
 - 나) 실시방법 : 체력시험 당일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분석 의뢰
 - 다) 금지약물 : 총 24종(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검사 포함)

- 1)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종합병원(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가)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따름 (별첨 7)
 - 나) 신체검사 결과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지1]에 따름(별첨8) ※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쇄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다) 신체검사 수수료는 응시자 개인별로 부담(검사 시 직접 납부)
 - 라)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최초일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2) 서류전형 : 필요서류 제출여부 및 응시자격 요건, 가산특전 등 신규채용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심사
- 3)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4)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일시·장소 등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1) 면접방법: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 실시
- 2)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60점 중 3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불합격으로 함)
- 3) 인·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개별면접 자료로 활용함
- 4) 평가 요소 및 점수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1단계 (집단면접)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개별면접)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3 최종합격자 결정 등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나. 추가합격자 결정

- 1)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웅시 결격사유 등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제51조(부정행위자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1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2019. 4. 17.)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마.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바.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라.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8.1.1. ~ 2001.12.31.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8.1.1. ~ 1999.12.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 「병역법」제72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경상남도와 창원시 응시자 공통 적용)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 경쟁 채용	일반소방	 ※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기간
	구 조 구 급	 ※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기간
경력 경쟁 채용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전역 전 기 화 학 정보통신 건 축 안전교육 언론공보 항해사(선박) 기관사(선박)	거주지 제한 없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별첨 7)

바. 자격증(면허증), 경력제한

용구분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공 통 (전체응시자)	대형면허 또는 보	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통면허를 받은 자 필기시험일이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해야 함		
공 통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 ※ 종전의 재직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계급으로 1년 0	2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그 경력 중 하사 이상의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구 조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 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각군 참모 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공 통 (전체응시자) 공 통	용 (전체응시자)		

채용	용구분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경력경쟁 채 용	구 급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확인서 필요)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복무기관에서 발행한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관련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 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별첨 9)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학과는 소방관련과목(별첨 9)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함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학과계통증명서(별첨 10-1, 별첨 10-2) 제출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의무소방원 전역자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채용	용구분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 용	전 기	전기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화 학	화학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학류제조, 위험물
	정보통신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동신선로
	건 축	건축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안전교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유아·아동의 보육·교육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근무경력은 보육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보육·교육한 실무경력에 한함 ※ 임용예정계급은 계급환산기준표(별첨 11)의 "소방사"에 상당하는 계급임
	언론공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언론 공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근무경력은 보도·취재·기사 등의 작성·편집이나 대민 홍보와 관련된 실무경력에 한함 ※ 임용예정계급은 계급환산기준표(별첨 11)의 "소방사"에 상당하는 계급임

채 용 방 법	분 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선박 항해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 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채용시험	선박 기관사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소지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 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자격 · 경력 관련 유의사항

1) 면허·자격의 보유(발급) 및 경력의 산정 기준일

적용분야	종 류	보유 기준일
공 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일
공개경쟁채용	가산점 관련 자격증	필기시험일 전일
경력경쟁채용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필기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기간 산정	면접시험 최종일

- ※ 자격·면허(운전면허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유효해야 함
- 2)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 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함
- 3)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4)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년(365일), 1월(30일) 단위로 계산함
- 5)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6) 경력증명을 위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별첨 12),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를 제출해야 함(세부사항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근무경력사실 확인서」(별첨 13) 제출
 - ※ 선박 항해사·기관사는 「승무경력증명서」(민원24) 별도 제출
- 7) 근무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함
- 8)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 10-1 또는 별첨 10-2)를 제출해야 함
- 9)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10) 시험에 관한 제출·증빙서류에 거짓·위조·변조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공개경쟁 채용 및 경력경쟁 채용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٨	험	일 정	
시험명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필기시험	3. 14.(목)	4. 6.(토)	5. 2.(목)
공개경쟁	2019. 2. 21.(목) 09:00 ~ 2. 27.(수) 18:00	인터넷	체력시험	5. 2.(목)	5. 14.(화) ~5. 23.(목)	6. 7.(금)
채 용 경력경쟁	(취소기간) 2019. 2. 21.(목) 09:00	접 수 (방문·우편	신체검사	6. 7.(금)	6. 7.(금) ~6. 11.(화)	7. 5.(금)
채 용	~ 3. 5.(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 불가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6. 7.(금)	6. 12.(수) ~6. 21.(금)	7. 5.(금)
	※ 토·공휴일은 제외		면접시험	7. 5.(금)	7. 16.(화) ~7. 23.(화)	8. 1.(목)

- ※ 신체검사는 검사기간 중에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 후 서류 전형 시 제출해야 함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변경 될 수 있음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 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소방직 공무원"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2) 접수기간 : 2019. 2. 21.(목) 09:00 ~ 2. 27.(수) 18:00 (기간 중 24시간, 토·공휴일 제외) 취소기간 : 2019. 2. 21.(목) 09:00 ~ 3. 5.(화) 18:00 (기간 중 24시간, 토·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
- 3) 응시수수료 : 5,000원(지방소방사 기준)
 - 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소요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한 경우에 한해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9조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환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확인 및 환불)

- 4)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해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가로)×4.5cm(세로),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임용기관(경상남도, 창원시)을 반드시 선택
- 2)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채용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단,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취득예정" 선택
- 4)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산점을 등록·확인**해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 원서접수 시 운전면허에 대한 응시자격과 가산자격을 각각 입력해야 함에 유의
- 5)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서류전형) 실시
- 6) 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8)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함
 - ※ 출력장소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9) 응시자는 매 시험 당일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을 함께 지참해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灺 1577-0606)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함
-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선택해야 함
- 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각 과목별 만점의 1%~5%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2)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 차면허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 야 자격을 말함(별첨 14-1, 별첨 14-2)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4)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취업지원대상자 등)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
 - OMR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에 유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함
 - 가산자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 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2)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시 제출함(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3) 폐지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서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될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에 포함 함
- 4)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특전 대상자가 자격증에 의한 가산특전을 받는 경우 각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1)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소방직 공무원"란에 공고함
-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특히 가산점),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3)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4)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 5)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단계별로 별도 안내하는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해야 하며(이후 입장불가), 해당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함

- 6)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7)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바람
- 8)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9) 시험은 우천·강풍·강설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함
- 10)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11)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 유의사항

- 1)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2)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 3)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만약,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
- 4)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고,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5)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평일 09:00 ~ 18:00, 접수기간 09:00 ~ 21:00)
- 공고내용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소방행정과(055-211-5315, 평일 09:00~18:00)

경상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소방직 공무원"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1]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응시자가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의 총합계 응시자가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math>-1$

-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 하여 산출한다.
-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첨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 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재난 관리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연소 이론	2) 연기 및 화염	연기의 정의연소 가스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1 %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화재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이론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소화 이론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별첨 3]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의제기서

이의제기	(성명) (응시번호)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응시분야	• 응시시도 : • 응시분야 :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질의과목	• 해당과목 :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 경로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http://119gosi.kr) \rightarrow 회원가입 \rightarrow 로그인 \rightarrow 질의응답 \rightarrow 필기시험 문의

[별첨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중 즉	[18]	1	2	3	4	5	6	7	8	9	10
악력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kg)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kg)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앞으로 굽히기 (cm)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뛰기 (cm)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키기 (회/분)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i>7</i> 5	76	77	<i>7</i> 8 이상
달리기 (회)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첨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 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 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 <i>[</i> 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별첨 6-1]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지 참조)은 금지됩니다. (별첨 6-2)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 통에 90ml이상이 되도록 수집하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 B시료병에 30㎖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 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 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상남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 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 (B시료분석 요청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합격)으로 최종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양성)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붙임 치료목적사용 면책신 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별첨 6-3)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숭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 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 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 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별첨 6-4)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 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 chlorothiazide
- ▶ 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 ephedrine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 ▶ methadone

- ▶ morphine
- ▶ oxycodone
- ▶ oxymorphone

- ▶ pentazocine
- ▶ pethidine

Ⅱ.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¹⁾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별첨 6-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성 별 남 □, 여 □
3. 생년월일	4. 응시번호
5. 핸 드 폰	6.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	한 의	료전	정보를	王	함한	진단	소견					
,	사용 정당					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	품을	처방한	임상의학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1회 🗌	응급 🗌
duration of treatment	기간(주/월)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전공분야:

주소 :

전화: 팩스: 이메일:

서명: 날짜: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이해하고 있다.

서명: 날짜:

부모/보호자 서명 : 날짜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별첨 6-4]

동 의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20 ○ ○ 년 월 일

위 본인은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 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 을 동의합니다.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첨 7]

소 방 공 무 원 신 체 검 사 의 불 합 격 판 정 기 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 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다. 진성적혈구 과다증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별첨 8]

■ 소방공무원 채용	용시험 시행규	·칙[별지 제	1호서식]						
							1		(앞쪽)
		HL 77 C	3 OI =	:11 0	4 I = II 7J 4				· 진
	소	양공급	F원 7	대중	신체검시	† ^1		(3c	m×4cm)
수험번	<u> </u>	응시-	브아		 성 명	생 년 월	ol		
THU	<u> </u>	0/11	프야		Ö Ö	· 경 긴 결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신	장				체	중			kg
건	Ö			cm	혈	압			
시력 만눈	좌:	우:	색	신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색	각)		0 = i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1	<u> </u>			
비뇨기	 질 환				혈청	 검사(매독)			
	검 사				フ	 타			
위와 같이	건사하였 	 슴니다					<u> </u>		
11:1 = -1	L 1-1.	п т т.					년	월	일
					フェルスし/ [담당의사)	Ŀ		
					1 ¹ /1 ¹ /1	타당의사) 		(지명 .	또는 인)
검 사 결		[] 합 [] 불	격 합 격		불합격 또는	:			
합 격 여	부		성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									
정밀검사 필요	로 여부 │*	필요시 소	견서 별도	점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	소 :					전화번호(1	3) :		
					의로	로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9]

소방 관련 과목

분야	과 목
사회과학분야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12)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실무분야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10)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자연과학분야 (14)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 2. 2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 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별첨 10-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	<u>ই</u>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〇〇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〇〇시·도 공고문(201 . . 〇〇)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1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10-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핰	럭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4	4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도 공고문(201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1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11]

계급환산기준표

구브	국가·지방공			7.	교육공무원		
계급	무원 또는 별 정직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 인	초 · 중 · 고등학 교교 원	전문대학	4 년 제 대학교원	정부관리 기업체
소방령 지 방 소방령	5급		소 령	18~23 호 봉	13~18 호 봉	11~16 호 봉	과 장 차 장
소방경 지 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 위	14~17 호 봉	11~12 호 봉	9~10 호 봉	계 장 , 대 리 (3년이상)
소방위 지 방 소방위	6급	경 위	중위·소 위·준 위	11~13 호 봉	9~10 호 봉	7~8 호 봉	계 장 , 대 리
소방장 지 방 소방장	7급	경 사	상 사	9~10 호 봉	8호봉 이 하	6호봉 이 하	평 사 원 (3년이상)
소방교 지 방 소방교	8급	경 장	중 사	4~8 호 봉			평사 원
소방사 지 방 소방사	9급	순 경	하 사 (병)	3호봉 이 하			평 사 원

비고

-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제 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한다.
-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적용한다.

[별첨 12]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현황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u>†</u>)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녉	워	01
一 」	≅	_

1.1	(직인
Λŀ	(식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13]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 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 무 경 력	(주)ㅇㅇ병원	2017	주 임	95.05.01. (2 년	~ 97.12.01. 년 8월)	응급구조사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00시간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서명)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 임:폐업사실증명서 1부.

[별첨 14-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건축구조,건축기계설 비,건축시공,건축품질 시험,건축목재시공,건 축일반시공,건설기계, 상업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산업기 계설비,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철도차량정 비,조선,항공기관,항공 기체,차량,자동차정비, 화공,위험물,건축전기 설비,발송배전,전기원 보송,전기철도,철도신호, 전기,산업계측제어,전 자응용,전자기기,정보 자유용,전자기기,정보 용,정보통신,통신설비, 가스,건설안전,기계안 전,산업위생관리,소방, 인간공학,전기안전,화 공안전,비파괴검사,기 상예보,방사선관리,원 자력발전,에너지관리 기능장	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 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 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 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 닉스,철도차량,조선,항 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 자동차,화공,화약류제 조,화학분석,생물공학, 전기,전기공사,전기철 전기조시,전기공사,전기철 전기전자,임베디드,전자 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 리,정보보안,방송통신,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가스,건설안 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 리,소방설비(기계,전기), 임간공학,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방재,누 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 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 검사,자기비파괴검사,본 음파비파괴검사,리상라 정,원자력,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당한 한 한 문전,롤러운전(舊모터그레이더운전,아 스팔트피니셔운전),불도저운전,천장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장기계정비,게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업기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업기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업기계,기계정비,하등자,설비보전,농기계정비,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저어,전자,3D프린터개발,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3D프린터운용,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잠수기능장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의사, 변호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2급	
② 사무관리	소방시설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 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 초과 시 5%에 기재)

^{※ &}quot;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별첨 14-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분 야 (개수)	자격(면허) 종목			
	기 술 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5%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 축	기 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29)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29)	기 능 사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	
건설 기계 운전 (11)	기 능 사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舊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	
	기 술 사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F0/	
	기 능 장	건설기계정비	5%	
기계 장비	기 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3%	
설비 • 설치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31)	기 능 사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1%	
	기 술 사	철도차량	5%	
 철도	기 능 장	철도차량정비	J /6	
(5)	기 사	철도차량	3%	
(3)	산업기사	철도차량	1%	
	기 능 사	철도차량정비		
	기술사	조선	5%	
조선	기 사	조선	3%	
(6)	산업기사	조선	1%	
	기 능 사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0	

분 야 (개수)	자격(면허) 종목				
	기 술 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5%		
항공	기 사	항공	3%		
(8)	산업기사	항공	1%		
	기 능 사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기술사	차량	5%		
자동차	기능장	자동차정비 지도한정비			
(8)	기 사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정비	3%		
(-)	산업기사				
	기능사	· ·	1%		
	기술사	화공	5%		
화공	기 사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3%		
(7)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1%		
	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5%		
(3)	산업기사	위험물	1%		
	기능사	위험물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5%		
전기	기 능 장	등 장 전기			
(16)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3%		
(10)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1.0/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1%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E 0/		
	기 능 장	전자기기	5%		
전자	기 사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3%		
(21)	산업기사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 ,	선합기사	3D프린터 개발	1%		
	기 능 사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3D			
		프린터 운용			
정보 기술 (10)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5%		
	기 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3%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1 0/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1%		
방송	기 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 무선	산업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구선 (6)	기능사		1%		
(3)	107	0000, 1000			

분 야 (개수)	자격(면허) 종목			
통신 (10)	기술사	정보통신	5%	
	기 능 장	통신설비	3%	
	기 사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 능 사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1%	
	기술사	가스 거서아저 기게아저 사어의새과리 소바 이가고하		
	기 능 장	가스		
안전 관리 (27)	기 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보건, 방재	3%	
	산업기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기 능 사	가스		
	기술사	기 술 사 비파괴검사		
비파괴	기 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3%	
(15)	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1%	
	기 능 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1 /0	
에너지 • 기상	기 술 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5%	
	기 능 장	에너지관리	5%	
	 기 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3%	
(13)		설비(태양광)		
(13)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	
	기 능 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자격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